국내주식 소수단위매매거래 설정약관

제정일: 2022.09.26
개정일: 2023.10.12
시행일: 2023.10.12

제1조(약관의 목적)

이 약관은 고객과 미래에셋증권(이하 "회사"라 한다) 간의 국내상장주식(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소수단위 주식거래(이하 "소수주식거래"라 한다)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수주식거래"란 고객의 소수단위 주문을 합산하고 회사가 부족분을 채워 온주로 거래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소주주식거래를 위해 각 목의 방법으로 매매거래를 한다.
   가. 고객이 회사에 위탁한 소수단위 주식주문을 회사가 취합하여 온주를 만든 후 회사의 명의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호가를 제출하여 거래가 체결될 수 있도록 한다.
   나. 회사가 체결한 주식은 예탁결제원증권신탁(이하 "증권신탁"이라 한다) 제도를 활용하여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되며, 고객은 소수단위 주식 주문 수량에 따라 배분 받은 수익증권을 취득하고, 증권의 소유자로서 신탁주식의 배당금 등 경제적 권리를 가진다.

2. "증권신탁"이란 회사가 소수주식거래로 체결된 주식(이하 "소수주식"이라 한다)을 신탁계약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이전 신탁하고, 예탁결제원은 신탁된 주식(신탁재산)으로 수익증권(전자등록방식)을 발행하고, 이를 수익자인 회사 및 고객에게 제공하여 체결수량 만큼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수익증권발행신탁(신탁수익증권)을 말한다.

3. "회차"란 회사가 고객의 소수주식거래 주문 중개를 위해 주문을 취합하고 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는 일련의 업무를 반복하기 위해 정해 놓은 주문신청시간의 주기를 시간대별로 일련 번호를 부과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소 개장 후 첫 주문이 1회차 주문)

4. "단수주"란 회사가 권리, 상장폐지, 서비스중단 등의 사유로 소수주식 잔고를 일반주식 잔고로 일괄온주전환 하게 된 경우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소수주식 중 온주전환 후 남은 소수점미만의 주식을 말한다.

제3조(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① 소수주식거래 서비스는 국내 거주자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이용계약은 회사에 주식거래를 위한 계좌가 개설되어 있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약관 및 유의사항에 동의하고, 서비스의 등록을 완료하면 성립한다.

② 소수주식거래 서비스는 국내 상장주식 중 회사가 선정한 종목에 한정하여 제공하며, 선정된 종목 확인은 [별지]의 4. 선정종목(매매가능종목)의 조회에 따른다.

제4조(위탁증거금 납부)

고객은 소수주식거래를 위해서 매수대금의 100%에 해당하는 현금을 위탁증거금으로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거래구조 및 가격결정 등)

① 소수주식주문은 실시간주문 및 실시간체결 거래가 아니며, 고객의 소수단위 주식주문을 회사가 일괄 취합하여 부족분을 자기분으로 채워 온주로 만든 후 회사명의의 계좌에서 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한다.

② 회사의 거래소 호가제출 후 체결된 주식은 체결합산금액을 체결합산수량으로 나누어 평균체결단가를 산정하며 고객의 주문신청금액 또는 주문수량에 따라 안분배분 방식으로 체결배분 한다. 평균체결단가 및 체결금액은 원미만 반올림한다. 원미만 반올림하여 계산된 매도 체결금액이 1원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③ 체결수량의 안분배분 후 미배분 잔량이 발생하는 경우 접수시간, 신청금액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가 배분할 수 있다.

④ 고객체결분의 매매결제처리시 선입선출방식을 따르며, 위탁매매수수료, 거래세 등의 제비용을 징수한다.

⑤ 회사가 고객의 소수단위 매도주문의 위탁매매 중개를 위해 거래소 호가제출시 부족분을 회사의 소수주식 보유잔고(신탁재산 한정)로 채워 온주로 만들어 매도체결한 경우 다음 고객의 매도주문이 접수되는 회차(당일 한정)에 회사의 당일의 신탁재산 매도분을 포함하여 체결배분 한다.

제6조(잔고 등)

① 소수주식의 잔고는 일반주식과 별도 분리하여 제공하며, 소수점 이하 여섯째자리까지 제공한다.

②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8조 및 동 시행세칙 제112조에 따라 소수주식은 수익증권으로 분류되므로 대용증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소수주식은 신용거래융자나 증권담보융자 거래의 원담보로 제공하지 않는다.
(보유종목이 담보제공가능 종목이면, 소수주식(정수이상의 수량 한정)을 온주전환 후 이용)

④ 회사는 소수주식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자기재산으로 취득하게 되는 주식을 종목별로 5주 이내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5주가 초과하는 경우 2거래일 내 공개시장에서 매각해야 한다.

제7조(질권설정 및 양도 등)

① 소수주식으로 보유한 개별 종목의 질권설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및 소유자증명서 및 전자등록증명서의 발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수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온주전환(정수주식수량에 한함) 후 일반주식으로 전환하여야 가능하다.

제8조(권리 등)

① 고객은 소주주식거래시 소수주식에 대한 의결권(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의결권(주주권)의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실질주주생성 기준일까지 소수주식(정수주식수량에 한함)의 온주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온주전환 신청 방법은 제10조에 따른다.

② 주식의 권리발생시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한 권리는 행사할 수 없으며, 행사가 제한되는 권리 등은 [별지]의 1. 제한되는 권리행사에 따른다.

③ 소수주식으로 보유한 종목의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는 경우 회사는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서를 회사명의로 수령하여 환가한 후 고객의 보유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급일 및 환가 기준 등은 [별지]의 3. 환가 및 지급일 등 기준에 따른다.

④ 권리발생, 권리발생으로 인한 비상장주식의 발생, 상장폐지 결정으로 정리매매가 진행되는 경우 등 회사는 해당 종목의 소수주식거래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수주식잔고를 일괄온주 전환하여 일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소수점미만의 단수주의 경우 환가 후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급일 및 환가의 기준 등은 [별지]의 3. 환가 및 지급일 등 기준에 따른다.

⑤ [별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현금배당, 주식배당 등의 별도 신청절차가 없는 권리의 경우 일반주식의 권리배분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9조(신탁계약종료 등)

① 소주주식거래 서비스 종목 중 상장폐지가 예상되거나, 권리발생으로 인해 비상장주식의 발생 또는 회사가 예탁결제원과 계약하지 않은 소수종목이 발생 등 더 이상 신탁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회사는 해당 종목에 대한 예탁결제원과의 신탁계약을 종료하여 서비스를 중단한다.

② 회사가 신탁계약을 종료하지 않았더라도 예탁결제원의 직권으로도 신탁계약은 강제 종료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종목의 소수주식거래 서비스는 중단된다.

③ 소수주식으로 보유한 종목의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계약 종료 이전 회사는 일괄 온주전환을 처리하여 일반주식으로 전환하며, 소수점미만의 단수주수량을 보유한 경우 환가하여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급일 및 환가 기준 등은 [별지]의 3. 환가 및 지급일 등 기준에 따른다.

제10조(온주전환)

① “온주전환”이란 소수주식(전자등록수익증권)을 일반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② 소수주식거래로 매수하여 체결된 주식은 일반주식잔고와 분리하여 소수주식잔고로 관리한다. 이에 따라, 1주 이상의 소수주식 정수수량은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일반주식으로 자동전환 한다.

가. 온주전환은 매수결제(매수일T+2영업일) 완료된 정수이상의 잔고 수량에 한정한다.

나. 회사는 온주전환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경우 일반주식으로 즉시 전환한다.

제11조(수탁의 거부 등)

① 회사는 고객의 매매거래의 위탁에 관하여 가장성매매, 불공정거래 등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공익과 투자자 보호 또는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매거래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신탁계약종료 예정 종목이거나, 권리발생에 따라 매매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 종목의 소수주식주문의 수탁을 중지하고 일반주식으로 일괄전환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증권매매 관련 미수금을 발생시킨 고객에 대하여 새로운 주문의 수탁 또는 고객자산의 인출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소수주식 수량을 처분하여 임의충당 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제9조(결제불이행 등에 대한 처리)기준을 따른다.

제12조(예탁증권 등)

① 회사는 예탁결제원과의 신탁계약에 따라 고객의 소수주식을 회사의 명의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신탁하고, 예탁결제원으로부터 해당 전자등록수익증권을 발행 받는다. 이에 전자등록수익증권에 관한 배당금, 주식배당, 신주인수권증서, 전환청구권, 교환청구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신규로 발행되는 주권을 고객을 위하여 수령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전자등록수익증권으로부터 발생한 현금배당, 주식배당 등에 대하여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또한 예외적으로 신주인수권증서의 환가액지급 및 회사의 일괄온주전환 처리에 의한 소수점미만의 단주주식의 환가액 지급시 주식거래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거래비용으로 부과할

수 있다. 고객의 계좌에 현금이 부족하여 회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배당소득세 또는 매도거래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가 대신 납부한 금액에 대한 이자는 면제한다.

③ 회사가 신수인수권증서를 수령하여 고객에게 환가 후 지급하였으나,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이 취소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지급한 신주인수권증서 환가액을 환수할 수 있다. 이때 계좌에 현금이 부족한 경우 기타대여금이 발생하며, 기타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면제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회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배당소득세 및 매도거래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회사는 이 사실을 고객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제13조(위탁수수료의 징수)

① 회사는 소수주식거래의 위탁을 받아 매매거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결제시 [별지]의 5. 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를 따른다.

② 특정조건에 해당하는 매매거래의 위탁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고객과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4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이라 한다)및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주소변경 등의 통지)

고객은 자신의 주소, 전화번호 등과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주소, 대리권의 범위 등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매매의 집행, 매매

대금의 수수 및 예탁, 보관의 지연 또는 불능
2.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7조(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18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관할법원)
①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방문판매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경우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기타)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매매거래설정약관 및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다만, 관계법규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우선 적용된다.

이 약관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본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별지]

1. 제한되는 권리행사

- 소수주식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유상증자, 반대의사, 매수청구, 주주채권청약 등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단,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는 경우 회사가 수령하여 환가 후 지급한다.
- 제한되는 권리의 행사를 위해서는 기준일 경과 전 정수수량에 한하여 온주전환시 가능하다.
- 별도의 신청이 불필요한 권리이더라도 회사의 소수거래 서비스 일시 중단 결정시 회사는 권리발생 기준일전 일괄온주전환 처리하여 고객의 권리행사를 일반주식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객이 보유한 소수점미만의 주식은 환가 후 현금 지급한다.
- 그 외 별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준 및 관계법규등에 따른다.

2. 환가지급사유

- 신수인수권증서 발행, 권리발생 등 종목의 소수거래서비스 정지에 의한 일괄온주전환 발생으로 소수주식을 일반주식으로 일괄온주전환 하였으나, 소수점미만의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단수주를 환가하여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3. 환가 및 지급일 등 기준

- 신수인수권증서
  : 상장 5거래일 종가평균으로 신주인수권증서 최종거래일후 4영업일(T+4)에 지급한다.
- 정리매매종목의 소수점미만 주식
  : 정리매매 7거래일 종가평균으로 정리매매종료일 후 2영업일(T+2)에 지급한다.
- 회사의 일괄온주전환 처리 후 보유한 소수점미만의 주식
  : 일괄온주전환일의 종가로 온주전환일 후 2영업일(T+2)에 지급한다.
- 비상장주식의 소수점미만 주식
  :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환가하여 지급한다.
  지급일은 비상장주식의 입고일 후 7영업일(T+7)에 지급한다.
  회사는 해당종목이 비상장주식 거래시장 내 유동성부족 등 공정가액의 평가가 어려운 경우 액면가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 기업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평가기관의 산정 결과 통보일을 기준으로 7영업일(T+7)에 지급할 수 있다. 또한 기업평가기관에서도 평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회사는 고객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환가시 일반 주식매도와 동일한 제비용이 발생하며, 환가대상 종목이 상장종목인 경우 장내거래세율을 적용하고 비상장종목인 경우 장외거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후 현금으로 지급한다.

4. 선정종목(매매가능종목)의 조회

- 모바일 앱 “소수점매매가능종목”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위탁수수료의 징수

- 위탁수수료는 ‘회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 이용안내/문의 > 트레이딩가이드 > 매매수수료/예탁금이용료’에 게시

- 코스피/코스닥 시장 유관기관제비용수수료율 : 0.0036396%
  ※ 필요시 수시 조정 가능 (유관기관 :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 현금미수, 신용공여 상환차손, 만기미상환, 담보유지비율미달 등에 따른 반대매매시 적용되는 위탁수수료는 계좌의 기본수수료율 중 오프라인매매수수료율로 적용됩니다.

- 소수주식 매도 시 매매수수료와 별개로 주식거래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거래비용으로 부과할 수 있다.